

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상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37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31일

발 의 자 : 조상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인호, 이승미, 전병주, 박순규,
장상기, 김제리, 이병도, 황인구,
여 명, 권순선, 김수규, 채유미,
최 선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 제18조는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, 예·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활용된 설명서, 계획서, 명세서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.
- 따라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,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의 공개 외에 운영위원회 심의 시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함(안 제18조제4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유아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참조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의결과와 회의록,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설명서, 계획서,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회의록 작성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18조(회의록 작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와 회의록,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설명서, 계획서,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